

6. 都市交通整備促進法 施行令 改正令

大統領令 第15,097號 1996. 6. 29

주요 골자

- 가.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에서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사업 또는 시설을 시행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대폭 상향조정함(영 제13조 및 별표 1).
- 나.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한 경우, 교통계획·개발계획·도시계획도로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공사중의 교통저리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함(영 제15조).
- 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혼잡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주2회 이상 발생하고, 보행인교통사고가 주 5회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영 제25조).
- 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혼잡지역은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차량의 평균통행속도와 평균정지대시간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되, 우회도로의 확보와 대체교통수반의 확충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32조).

개정 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1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